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①법 제2조제8호가목의 광해방지분야 기술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사 : 광해방지,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공, 농화학,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2. 기능장 : 전기
3. 기사 : 광해방지,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응용지질, 일반기계, 화공, 전기, 산림, 소음진동,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4. 산업기사 :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전기, 산림,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5. 기능사 : 광산보안, 시추, 화약취급, 전기, 산림

②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광해방지기술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광해방지기술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으로서 1년 이상 광해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광해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광해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 이상의 광해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제2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인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제1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부담금의 산정·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 제목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납부의무자”를 “납부의무자(이하 “분할납부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할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를 각각 “법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광해방지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의2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실적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제38조의3제1항 중 “2014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한다.

제39조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기준 (제17조제1항관련)”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제17조제1항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기술능력란 다목 중 “토목”을 “토목, 자연생태복원, 조경”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다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가. 광해방지사업의 감리사업을 전문분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분야를 겸업할 수 없다.

별표 2의 제목 중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9조제3항 관련)”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9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표 4 및 별표 5로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중전의 별표 4) 제1호가목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300	500	8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을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 다목과 라목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된 경우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인정 취소			
나.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	법 제18조의4제1항제2호	인정 취소			

방지기술인에 한정한다)					
다.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별표 1에 따른 기술자격자에 한한다)	법 제18조의4제 1항제3호	인정정지(「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18조의4제 1항제4호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u> <u>자격 및 학력·경력) ①법 제2</u> <u>조제8호가목의 광해방지분야</u> <u>기술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기술사 : 광해방지, 자원관리,</u> <u>화약류관리, 지질 및 지반, 토</u> <u>목시공, 화공, 농화학, 산림, 대</u> <u>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u> <u>토양환경, 폐기물처리</u> <u>2. 기능장 : 전기</u> <u>3. 기사 : 광해방지, 화약류관리,</u> <u>광산보안, 토목, 응용지질, 일</u> <u>반기계, 화공, 전기, 산림, 소음</u> <u>진동, 토양환경, 폐기물처리,</u> <u>대기환경, 수질환경</u> <u>4. 산업기사 : 화약류관리, 광산</u> <u>보안, 토목, 전기, 산림, 소음진</u> <u>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u> <u>질환경</u> <u>5. 기능사 : 광산보안, 시추, 화</u> <u>약취급, 전기, 산림</u> <u>②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u> <u>방지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u>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광해방지기술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광해방지기술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광해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광해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광해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제25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
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제26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
② (생 략)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24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허
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
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5. 5년 이상의 광해방지 관련 분
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제2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
정 취소 등) 법 제18조의4제1항
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인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

-- 별표 4와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부담금의 산정 · 부과 · 징수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납
부유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납부의무자(이하 “분
할납부의무자”라 한다)-----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2. 삭제

3. ~ 5.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 8. (생략)

<신설>

-----.

-----.

1. 2.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할 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법 제46
조제1항-----

--.

3.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6
조제1항-----
-----.

1. ~ 8.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광해방지사업 분

	<u>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 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 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의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전 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실적증명서 발급 등에 관 한 사무</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광 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경력증 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 및 별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u>2014년 1월 1일</u>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 4</u>와 같다.	----- ----- -- <u>2022년 7월 1일</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u>별표 5</u>-----.
---	--